

대전지방법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나1236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김00 (000000-0000000)
2. 윤00 (000000-0000000)
3. 윤00 (000000-0000000)
4. 윤00 (000000-0000000)
5. 윤00 (000000-0000000)

원고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윤00,
모 김00

원고, 항소인들 주소 천안시 00동 479-9

원고, 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환

원고, 항소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종수

피고, 피항소인

1.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0동 12-1
대표이사 김00, 김00,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2. 00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001가 1

대표이사 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21793 판결
변 론 종 결 2006. 6. 15.
판 결 선 고 2006. 7. 6.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원고 김00에게 금 11,159,337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29.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김00의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00에게 금 24,409,245원, 원고 윤00에게 금 250,000원, 원고 윤00, 윤00, 윤00에게 각 금 100,000원,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00에게 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윤00은 2001. 7. 16. 피고 00화재해상보험(이하 '피고 00화재'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01. 7. 16.~ 2002. 7. 16.로 정하여 충남 0그0000호 뉴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Royal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상품명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26세이상 2회납 플러스1 OK특약, 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김00은 1998. 10. 10. 피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00생명'이라 한다)와 원고 김00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단체보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무배당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윤00과 김00은 부부이고, 원고 윤00, 윤00, 윤00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Royal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약

관(을 제1호증) 제32조, 제36조 제1항}, 이 사건 무배당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분류표 중 제1 내지 6급 장애를 입을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무배당단체보장보험약관(을 제3호증) 제1항}

다. 원고 김00은 2001. 12. 29. 21:00경 충남0그 0000호 뉴소나타를 운전하여 온양 방면에서 천안 남파 방면으로 운행 중 천안시 다가동 충무로 고가에 이르러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 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결과, 당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신체(재)감정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24% 상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고 이 사고의 기여율이 50%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 손상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율 24%의 2년 한시장애를 입는데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 김00의 장애의 정도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당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의 신체(재)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이후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요추제3-4간 전방위증, 요추제4-5 및 요추제5-천추제1간 추간판탈출 증 등의 요추부 장애가 있었으나 이는 위 김00의 기왕증{원고 김00은 이 사건 무배당 보험 가입 전에 이미 8년간 좌골신경통,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었다}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는 요추부 염좌에 불과한 점, 위 요추부 염좌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서 테이블 14, 척추항, 요추부 III-A-c-5항을 준용하여 24%의 노동능력을 2년간 한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당심법원의 단국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결과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법원의 단국대학교병원장의 신체(재)감정회신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8,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00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책임의 존부

(1). 피고 00화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00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00화재는 원고 김00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피고 제일화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가 후유장해인 경우에만 보험가입자의 가족에게 위자료 소정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후유장해란 영구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장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김

월 평균 가동일수 : 22일

③ 노동능력 상실율: 24%

(나) 계산(원 미만은 버림)

① 2001. 12. 29.부터 2002. 4. 30.까지

$$40,922\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0.24 \times 3.9586 = \text{금 } 855,327\text{원}$$

② 2002. 5. 1.부터 2002. 8. 31.까지

$$45,031\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0.24 \times (7.8520 - 3.9586) = \text{금 } 925,709\text{원}$$

③ 2002. 9. 1.부터 2003. 4. 30.까지

$$50,683\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0.24 \times (15.4472 - 7.8520) = \text{금 } 2,032,522\text{원}$$

④ 2003. 5. 1.부터 2003. 8. 31.까지

$$52,483\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0.24 \times (19.1511 - 15.4472) = \text{금 } 1,026,388\text{원}$$

⑤ 2003. 9. 1.부터 2003. 12. 28.까지

$$52,374\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0.24 \times (22.7938 - 19.1511) = \text{금 } 1,007,333\text{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계산상 합계 금 5,847,279원이나 피고 제일화재가 일실소득이 금 5,849,337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금액으로 인정함)

(2) 향후 치료비 : 성형외과 수술비 510만원(다툼 없는 사실)

(3) 위자료 : 21만원(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00화재는 원고 김00에게 보험금으로 11,159,337원(= 금 5,849,337원 + 금 5,100,000원 + 금 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00화재는 원고 김00에게 보험금으로 11,159,33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사고일인 2001. 12. 29.부터 피고 00화재가 그 이행의무의 준수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00화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00의 피고 00생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취지의 감축 또는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

 판사 000 _____

 판사 000 _____